교원연수관리규정

제정 1999.10.01.	개정 2007.05.09.	개정 2017.09.25.
개정 2001.10.01.	개정 2013.09.30.	개정 2017.12.04.
개정 2002.03.01.	개정 2013.12.06.	개정 2023.06.1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6, 2017. 9. 25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임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말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2. 교원연수라 함은 국내일반연수, 국내산업체연수, 자기개발연수를 말한다. 단, 교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3. 국내일반연수라 함은 전공과 관련하여 전임교원이 수행하는 국내 학회, 협의회, 세미나, 학술대회 등 학술연구 관련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4. 국내산업체연수라 함은 전공과 관련하여 전임교원이 수행하는 국고지원 산업체연수를 포함한 국내 산업체기관에서의 기술지도, 실무연수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5. 자기개발연수라 함은 전공과 관련하여 전임교원이 수행하는 워크숍 참석 등 기술 및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
제2조의2(관리부서) 연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일반연수 : 교육과정혁신센터 <개정 2023. 6. 15.>
2. 국내산업체 연수, 자기개발연수, 국고지원 산업체연수 : 산학협력팀 <신설 2017. 12. 4.>

제3조(연수기간) 연수 구분별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
1. 국내일반연수 : 연중 수시
2. 국내산업체연수, 자기개발연수 : 하계 및 동계방학
3. 국고지원 산업체연수 :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연수비 지원) 교수 1인당 지원금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 교원 연수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지원한다.

제5조(연수자의 의무) 연수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일반연수 :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국내산업체연수, 자기개발연수 : 연수 참가 15일 전에 연수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국고지원 산업체연수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연수비 지급) 연수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수업무 관리부서는 결재 완료된 연수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수비 지급을

지출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.

2. <삭제 2017. 9. 25.>

3. 연수비는 연수자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5.>

제7조 <삭제 2017. 9. 25.>

제8조 <삭제 2017. 9. 25.>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7. 9. 25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,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,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,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